

정 정 신 고 (보 고)

2015년 10월 23일

1. 정정대상 공시서류 : 투자설명서

2.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: 2009년 5월 4일

3. 정정사유

- 투자신탁 명칭 변경 : 한국투자 신종 개인용 MMF 1호 → 한국투자 신종 개인용 MMF 1호(국공채)
- 투자대상 자산 변경(사채권 삭제)
-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(2015.1.1. 시행, 단기금융상품의 범위에 채신관서에의 예치 추가)
-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(2015.07.08. 시행,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추가)

4. 정정사항

항 목	정정사유	정정전	정정후
제 1부. 1. 집합투자 기구 명칭	명칭 변경	한국투자 신종 개인용 MMF 1 호	한국투자 신종 개인용 MMF 1 호(국공채)
제 2부. 1. 집합투자 기구 명칭	명칭 변경	한국투자 신종 개인용 MMF 1 호	한국투자 신종 개인용 MMF 1 호(국공채)
제 2부. 8. 집합투자 기구 투자대상	투자대상 자산 변경 (사채권 삭제) 시행령 개정사항 반 영(2015.1.1. 시행, 단기금융상품의 범 위에 채신관서에의 예치 추가)	-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 재산을 원화로 표시된 자산 으로서 다음 각 호의 투자대 상에 운용한다. 다만, 채무 증권(법 제4조 제3항의 국채 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 권, <u>사채권</u> , 기업어음증권에 한하며, 환매조건부채권 매 매는 제외한다)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%이상을 운용 하여야 한다. 1. (생략) 2. 남은 만기가 5 년 이내 인 국채증권, 남은 만기 가 1 년 이내인 지방채증 권 · 특수채증권 · <u>사채권</u> (<u>법 제 71 조 제 4 호 나목</u> <u>에 따른 주권관련사채권</u>	-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 재산을 원화로 표시된 자산 으로서 다음 각 호의 투자대 상에 운용한다. 다만, 채무 증권(법 제4조 제3항의 국채 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 권, 기업어음증권에 한하며, 환매조건부채권 매매는 제외 한다)에 투자신탁 자산총액 의 40%이상을 운용하여야 한다. 1. (현행과 같음) 2. 남은 만기가 5 년 이내 인 국채증권, 남은 만기 가 1 년 이내인 지방채증 권 · 특수채증권 · 기업어 음증권. 다만, 환매조건 부매수의 경우에는 남은

		<p><u>및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권은 제외한다</u>) · 기업어음증권. 다만, 환매조건부매수의 경우에는 남은 만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.</p> <p>3. ~ 4. (생략)</p> <p>5. 만기가 6 개월 이내인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각 목의 <u>금융기관에의 예치</u></p> <p>6. ~ 9. (생략)</p> <p>-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 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이상을 다음 각 호의 자산에 운용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잔존만기가 1 영업일 이내인 자산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</p> <p>가. 양도성 예금증서 · 정기예금</p> <p>나. 지방채증권 · 특수채증권 · <u>사채권(법 제 71 조 제 4 호 나목에 따른 주권관련사채권 및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권은 제외한다)</u> · 기업어음증권</p> <p>다.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에 따른 어음(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)</p> <p>라. 전자단기사채</p>	<p>만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.</p> <p>3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만기가 6 개월 이내인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각 목의 <u>금융기관 또는 「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체신관서예의 예치</u></p> <p>6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-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 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이상을 다음 각 호의 자산에 운용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잔존만기가 1 영업일 이내인 자산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</p> <p>가. 양도성 예금증서 · 정기예금</p> <p>나. 지방채증권 · 특수채증권 · 기업어음증권</p> <p>다.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에 따른 어음(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)</p> <p>라. 전자단기사채</p>
--	--	--	---

		5. ~ 7. (생략)	5. ~ 7. (현행과 같음)
제5부. 1. 가. (3) 투자자총회 결의사항	시행령 개정사항 반영(2015.07.08. 시행,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추가)	<p>-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.</p> <p>1.~5. (생략)</p> <p><u>5의 5.(신설)</u></p> <p>6.~9. (생략)</p>	<p>-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.</p> <p>1.~5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5의5.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(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)</u></p> <p>6.~9. (현행과 같음)</p>